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15 호 2021. 11. 4.(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4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5호[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사항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6호[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8호[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9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50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30호[당사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38호[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64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65호[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72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7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74호[공시송달 공고] 3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83호[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3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4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1215-3번 지	하천의 명칭	○ 상안천
점용 내용	○ 콘크리트전주 설치	점용 면적	○ 일시: 18.0m ² ○ 계속: 0.398m ²
점용 기간	○ 일시: 2021. 11. 1. ~ 2021. 11. 2. ○ 계속: 2021. 11. 3. ~ 2025.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45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협의 년월일	협의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협의기간	점용목적	비 고
		성 명	주 소					
'21.10.28.	제2021 -10호	776부대 2대대	울산광역시 복구 황토전길 42-1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252번지	144	2021.10.29. ~ 2036.10.28.	해상사격장 조성	조건부 협 의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46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신고승인 년월일	승인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착공예정 일	준공예정 일	공사내용
		성 명	주 소					
'21.10.29.	제2021-2호	7765부대 2대대	울산 복구 황토전길 42-1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252번지 일원 공유수면	14.4	2021.10.30.	2022.03.01.	해상사격장 표적 설치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10. 29.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우수관 및 석축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958-38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149.0m²
 - 2) 영구: 36.0m²
 - 나. 기 간
 - 1) 2021. 11. 5. ~ 2021. 11. 31.
 - 2) 2021. 12. 1. ~ 2026.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김순미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제내2길 50-3, 가동 201호(신천동)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 - 248호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아름다운 공존 사람과 동물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94 1층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토지의 점용	점용 면적	○ 일시: 9.0m ²
점용 기간	○ 일시: 2021. 11. 2. ~ 2021. 12. 23.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11. 2.
2. 점용·사용의 목적 : 토지의 굴착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215-23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8.0m²
 - 2) 영구: 0m²
 - 나. 기 간
 - 1) 일시: 2021. 11. 3. ~ 2021. 12. 31.
 - 2) 영구: -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 - 25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염포로 485	양정동 491-4	2021. 11. 04.	건축물 멸실
동대16길 11	호계동 258-2	2021. 11. 0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11. 0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330호

당사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당사1·2지구)
2. 사 업 위 치
 - 당사1지구 :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28-3번지 일원(221필/67,762㎡)
 - 당사2지구 :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250-1번지 일원(179필/62,872㎡)
3.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5. 사 업 기 간 : 2021. 10월 ~ 2023. 12월
6. 사 업 예 산 : 97,571천원(2021년 측량수수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조서 등
 -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전 화 : 052) 241-7282, 7285
 - 나. 팩 스 : 052) 241-7569
 - 다. 우 편 : (44248)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복구청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338호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울산광역시 복구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1. 10. 29.
 - 제공받는 자 : 한솔전산
 - 제공목적 : 2021년 2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2021년 2기분) 납부고지서 제작 관련 납부자 제공사항 공고알림
 - 공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13.(15일)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1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3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4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사업
 - 나. 명 칭: 강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산120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지정 : 도로개설(B=10m, L=251m, A=4,755m²)
 - 변경 : 도로개설(B=10m, L=251m, A=4,760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현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6번길 21, 603호
5. 사업기간
 - 가. 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과(☎052-241-7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365호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 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국가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추가(안 제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근거법규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붙임1, 붙임2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 붙임 3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4층 복지지원과(연암동, 북구청)
- 2) 전화번호 : 052-241-7606
- 3) 팩스번호 : 052-241-76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3조(지원대상) -----</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사람</p>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7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도서관 운영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소 설치
- 나. 주민 안전 강화 및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강화 등 지역 현안과 국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

2. 주요내용

- 가. 기구 신설(사업소) : 구립도서관(안 제2조제2항)
 - 1) 사업소 설치 목적 및 명칭과 위치(안 제11조)
 - 2) 관장의 직무(안 제12조)
 - 3) 사업소 소관사무(안 제13조)
- 나. 부서 신설 : 미디어정보담당관(안 제4조)
 - 1) 기획조정실 직제 조정(안 제4조제1항)
- 다. 부서 소속 국 변경 및 부서 명칭 변경 : 주민소통과(안 제5조)
 - 1) 행정지원국 직제 조정(안 제5조제1항)

라. 부서폐지 : 도서관과(안 제5조)

1) 행정지원국 직제 조정(안 제5조제1항)

마. 부서 명칭 변경 : 안전정보과 → 안전총괄과(안 제7조)

1) 안전건설국 직제 조정(안 제7조제1항)

바. 분장사무 조정

1)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조정

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분장사무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주민소통담당관 분장사무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분장사무 신설(안 제4조제2항제2호)

2)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

가) 도서관과 분장사무 삭제(안 제5조제2항제5호)

나) 주민소통과 분장사무 신설(안 제5조제2항제8호)

3)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

가) 정보관리, 정보통신 분장사무 삭제(안 제7조제2항제6호)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ginger@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문화예술회관과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소통담당관”을 “미디어정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출자·출연기관 관리, 구정 홍보”를 “출자·출연기관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제5조제1항 중 “총무과”를 “총무과, 주민소통과”으로, “관광진흥과, 도서관과”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청소년, 도서관정책, 도서관 관리·운영”을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등에 관한 사무

제7조제1항 중 “안전정보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을 “통합관제”로 한다.

제4장 제목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

- ①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에”를 “사업소에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사업소별 관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회관

- 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
- 나.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체육활동·행사 등의 장소제공
- 다. 취미·교양·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예술품 등의 전시
- 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 개발
- 마.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 바.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2. 구립도서관

- 가.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리 및 운영
- 나. 독서문화 진흥사업
- 다. 지역문화·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
- 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을 “문화예술회관 관장, 구립도서관 관장, 동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회관, 구립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문화예술회관 관장,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문화예술회관 관장,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문화예술회관 관장,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을 “보건소·사업소·동”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서관 업무담당과장”을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정보과장”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정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을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 급 등) ① (생 략) ② ----- <u>문화예술회관</u> <u>관장</u> -----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 <u>주민소통담당관</u> ----- ----- ② (생 략) 1. ----- <u>출자·출연기관 관리, 구 정 홍보</u> ----- ----- 2. <u>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공 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 심사 등에 관한 사무</u> 3. ~ 5. (생 략)	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 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문화예술회관과 구립도서관</u> <u>관장</u> -----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 <u>미디어정보담당관</u> ----- ---- ② (현행과 같음) 1. ----- <u>출자·출연기관 관리</u> - ----- 2. <u>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u>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u>총무과</u> ----- <u>관광진 흥과, 도서관과</u> ----- ② (생 략) 1. ~ 4. (생 략) 5. ----- <u>청소년, 도서관정책, 도서관 관리·운영</u> ----- 6. · 7. (생 략) <신 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u>총무과, 주민소통과</u> ----- ---- <u>관광진흥과</u>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u>청소년</u> ----- - 6. · 7. (현행과 같음) 8. <u>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공 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u>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

안전정보과 -----

-----.

② (생략)

1. ~ 5. (생략)

6. -----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제4장 문화예술회관

제11조(설치) ①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에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한다.

② ----- 문화예술회관 -----.

제12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에 -----

-----.

② 관장 -----

-----.

제13조(소관사무) 관장 -----

-----.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

2.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체육활동·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취미·교양·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예술품 등의 전시

심사 등에 관한 사무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

안전총괄과 -----

-----.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통합관제 -----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 -----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 사업소 -----.

제12조(관장) ① 사업소에 각각 -----

-----.

② 사업소별 관장 -----

-----.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 -----

-----.

1. 문화예술회관

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

나.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체육활동·행사 등의 장소제공

다. 취미·교양·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예술품 등의 전시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 개발

5.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신 설>

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 개발

마.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바.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2. 구립도서관

가.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나. 독서문화 진흥사업

다. 지역문화·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

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업소 신설, 주민 안전, 뉴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강화등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
-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96명(증 17명) (안 제2조)

1) 집행기관의 정원 : 678명(증 1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증 3명)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3)

1) 5급 : 41명(증 1명)

가) 사업소 : 5급 2명(증 1명)

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 변동없음

2) 6급 이하 : 647명(증 16명)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ginger@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679명”을 “6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4명”을 “6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명”을 “1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696</u>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u>694</u>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u>41</u>	24	3	4	<u>2</u>	8
6급 이하 계	<u>647</u>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u>679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64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5명</u></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속기 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679</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677</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5</td> <td>4</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u>40</u></td> <td>24</td> <td>3</td> <td>4</td> <td><u>1</u></td> <td>8</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u>631</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u>679</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u>677</u>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u>40</u>	24	3	4	<u>1</u>	8	6급이하 계	<u>631</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p>제2조(정원의 총수) ----- -----<u>696명</u>----- -----.</p> <p>1. ----- <u>678명</u></p> <p>2. ----- <u>18명</u></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속기 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696</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694</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5</td> <td>4</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u>41</u></td> <td>24</td> <td>3</td> <td>4</td> <td><u>2</u></td> <td>8</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u>647</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u>696</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u>694</u>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u>41</u>	24	3	4	<u>2</u>	8	6급이하 계	<u>647</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u>679</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u>677</u>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u>40</u>	24	3	4	<u>1</u>	8																																																																																																																																																					
6급이하 계	<u>631</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u>696</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u>694</u>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u>41</u>	24	3	4	<u>2</u>	8																																																																																																																																																					
6급이하 계	<u>647</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374호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천곡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기구를 무단으로 불법적치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적치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11. 4. ~ 2021. 11. 18.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재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복구 신현동	186번지	미상	미상	불법적치	20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적치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1. 11. 18일** 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83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17조에서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10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1. 11. 4. ~ 2021. 11. 19.(15일간)
3. 자격요건
 - 노인복지 관련 시설, 단체 등 종사자
 -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접수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붙임) 작성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우편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4층
노인장애인과(연암동, 울산북구청)
 - 팩 스 : 052-241-7669
 - 이메일 : kn8406@korea.kr
 - 문의처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담당(☎ 052-241-7663)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정보제공 동의 포함)
 - 재직 및 경력증명 사본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6. 선정결과 : 2021. 12. 3.(금) / 개별통지
 - ※ 발표일시는 위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활동내용 : 정기회의 연 1회, 임시회의 수시

- 노인복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장 수여 : 회의 시 전달

9. 위원 해촉 사유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
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기 타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게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관련)
- 구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음
- 공개모집에 미달되거나 없을시 관련기관·단체·부서 추천으로 모집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담당 ☎ 052-241-7663)으로 문의